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23

발의연월일: 2020. 6. 17.

발 의 자:소병훈・박 정・송석준

인재근 • 안민석 • 강선우

이용호 · 윤호중 · 위성곤

김회재 · 임종성 · 한정애

김승남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됨.

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특별시·광역시장,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.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이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 며,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신설, 제6조, 제7조·제8조, 제8조의2·제8조의3·제8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종합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안 전 및 편의증진 종합계획(이하 "국가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 여야 한다.

- ② 국가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 표
-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3.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
- 4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정보구축 방안
- 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
- 6.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
지사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"특별시장등"이라 한다)와 협의하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국가종합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.
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국가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"특별시장등"이라 한다)는"을 "특별시장등은"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"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"을 "(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제8조의4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"로, ""기본계획""을 ""지역기본계획"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·제2항 각

호 외의 부분·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"기본계획"을 각각 "지역기본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기본계획을"을 각각 "지역기본계획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기본계획안"을 각각 "지역기본계획안"으로, "기본계획"을 "지역기본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·제8항·제9항 본문 및 제10항 중 "기본계획"을 각각 "지역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"기본계획"을 "지역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국가종합계획과의 연계) 특별시장등은 지역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제8조의3(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

1.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
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
한다.
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다.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보행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그 밖에 위원의 임기, 중앙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의4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)에 지역보행안 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지역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 -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 의하는 사항
 -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종합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 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
	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 본계획(이하 "국가종합계획"이 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국가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	1.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 향 및 목표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.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편의
	증진에 관한 사항4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정보구축 방안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6.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 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"특별시장등"이라 한다)와 협의 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 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국가종합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국가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6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 태조사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 한다. 이하 "특별시장등"이라 한다)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·시행하 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
② (생략)

제7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

<u>으로 정한다.</u>
제6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
태조사) ① 특별시장등은
- 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
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
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
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
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
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
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
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

라 <u>기본계획</u>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<u>기본</u>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<u>기본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~ 8. (생략)
-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시장등은 <u>기본계획에</u>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 거나 관리하는 도로·시설물 등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 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요 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<u>지역기본계획</u>
지역
기본계획
 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지역기본계획
<u></u>
1. ~ 8. (현행과 같음)
3
지역기본계획
<u>지역기본계획</u>
<u>.</u>
④ <u>지역기본계획</u>
·
•

- 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 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 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 지사를 거쳐야 한다.
-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 획안을 제출받으면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, 「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_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 동편의증진계획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·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 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기 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.
-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

⑤지역기본계획
<u>을지역기</u>
본계획을
<u>.</u>
6
<u>지역기</u>
본계획안
<u>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</u>
역기본계획
지역기본계획안
<i>7</i>

제출한 <u>기본계획</u>을,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<u>기본계획</u>을 확정·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<u>기</u> 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<u>기본계</u> 획을 변경할 수 있다.
- 9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기본계획</u>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)

① 특별시장등은 <u>기본계획</u>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 획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 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<u>지역기본계획</u>
<u>지역기본계획</u>
8
<u>স</u>
역기본계획
<u>지역기</u>
<u>본계획</u>
⑨ 지역기본계획
<u>지역기본계획</u> -
세8조(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)
① <u>지역기본계획</u> -
·

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」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 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행·교통 관련 계획(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)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 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 립된 것으로 본다.

② (생략)<신 설>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국가종합계획과의 연계) 특별시장등은 지역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.

- 제8조의3(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 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 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중앙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

 경 등에 관한 사항
 -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

 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

 관한 사항

- 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.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 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보행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.
- ⑥ 그 밖에 위원의 임기, 중앙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8조의4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

<신 설>

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)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
- 1. 지역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-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

 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

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

 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

 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